

사 규 번 호	6 0 - 5 - 4
관 리 부 서	감 사 팀
등 급	일 반

신고제도 운영지침



신고제도 운영지침

2022.05.01 제정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감사규정에 따른 신고제도의 운영,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임직원'이라 함은 삼양식품(주) 내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 ② '회사'는 삼양식품(주)를 말한다.
- ③ '협력사'는 회사와 거래 중이거나 거래를 진행할 예정인 회사를 말한다.
- ④ '업무 관련자'는 회사와 거래, 업무 진행 등과 관련된 임직원 이외의 개인을 말한다.
- ⑤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부서의 장 및 부서원 등을 포함한다.
- ⑥ '비밀보장 의무자'라 함은 신고제도를 통해 신고내용의 접수, 조사, 처리 등을 수행한 임직원 또는 직·간접적으로 신고자의 신원 및 해당 내용 등을 알게 된 임직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 ① 본 지침은 회사, 임직원, 업무 관련자, 협력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 ② 본 지침은 자회사를 감사하는 경우 자회사의 임직원, 업무관련자, 협력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신고 대상행위)

- ① 신고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명령, 규칙 등의 위반
 2. 회사의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 등의 위반
 3. 협력사 등과의 계약 위반 행위
 4. 협력사와의 불공정거래, 임직원의 금품·향응·접대·편의 등 부당 수수, 청탁, 부패 등의 불법 및 부당행위

5. 임직원의 공금횡령, 배임, 절도, 공갈, 회사 자산의 불법 및 부당 사용 등
 6. 채용 또는 인사 등의 비리
 7.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처리, 손해를 끼치는 행위
 8. 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9.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
 10.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11. 윤리행동지침 위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 및 조직문화 저해 행위
 12. 고의 또는 중과실, 비효율적 업무운영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13. 그 외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 ② 신고제도를 통하여 제1항의 신고 외에 다음 각 호의 제안도 할 수 있다.
1.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2.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임직원 추천 및 사유
 3. 협력사 지원에 대한 사항

제5조 (신고 의무)

- ① 임직원, 업무 관련자, 협력사 등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배제한다.
- ③ 신고 대상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임직원, 제2항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임직원의 경우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신고 방법)

- ① 신고방법은 신고전용 이메일, 우편, 전화, 방문신고, 사이버감사실, 기타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에 의한다.
- ② 신고내용 작성방법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작성한다. 단, 명확한 처리를 돕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육하 원칙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 ③ 신고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④ 제4조 제2항에 따른 제안은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한다.

제7조 (처리 방법)

- ① 감사인은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조사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대상자 및 부서에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인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접수된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하는 경우
 3. 접수된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의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 회사의 내규 및 감사부서의 장의 판단 하에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④ 감사인은 접수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 후 징계가 필요한 경우, 유관부서에 징계를 의뢰해야 한다.
- ⑥ 감사인은 신고에 대한 처리의 종료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한 결정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신고되어 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익명의 신고자가 알 수 있게 공지할 수 있다.
- ⑦ 조사결과는 감사규정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 및 보존한다.
- ⑧ 감사인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을 유관부서로 이관하여 검토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제안의 진행사항에 대한 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지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보장)

- ① 비밀보장 의무자는 신고자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용 및 신원 등의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피신고자, 피신고자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원, 신고내용 등의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감사인은 그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 제출이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부서는 요청에 불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⑤ 감사인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관련 유관부서에 징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자 보호)

- ① 회사는 임직원, 업무관련자, 협력사 등이 신고한 경우, 신고를 이유로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감사인은 해당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았는지 조사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신고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보호방안을 요청해야 한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이 신고자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감사인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관련 임직원을 징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 ① 감사인은 신고한 내용이 회사에 발생 또는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방하였는 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유관부서에 적절한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포상을 요청받은 부서는 포상과 관련된 규정 및 신고내용을 적절히 검토하여 포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22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침의 변경)

본 지침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의 내규에 따라 변경한다.